

# 과천시공사 평생학습운영위원회 운영지침

제정 2020.02.05. 지침 제10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지침은 과천시공사 평생학습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사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추천한 2인이 된다.

③ 위원은 각 부서대표로 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, 간사는 교육담당팀장이 되고, 서기는 본 위원회 업무 담당자로 한다.

**제3조(기능)**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토론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한다.

1. 교육훈련 운영방향 결정
2. 교육마일리지 운영기준
3. 교육훈련 예산 조정
4. 기타 평생학습 관련사항

**제4조(소집 및 의결)** ① 위원회의 소집은 연 2회(상·하반기 각 1회)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5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주관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6조(임기)**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, 부위원장 중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며, 각 부서대표의 임기는 그 부서 재직기간으로 한다.

**제7조(위임장 제출)** 위원회에 대리참석 하는 자는 위원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

여야 한다.

**제8조(해촉)** 위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촉하고,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.

- ①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
- ②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
- ③ 사망, 질병등 기타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

**제9조(회의록)**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지침은 공사 설립일 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[별지 제1호서식]  
 (제9조 관련)

<p>20 년 월 일 제 회 평생학습운영위원회 서명록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 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font-weight: bold;">과천시도시공사</p>		
의안번호	안 건	심 의 의 결 사 항
<p>위 의결·토의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함.</p>		
직 위	성 명	서명 날인

[별지 제2호서식]

20 년 월 일 제 회 평생학습운영위원회 회의록 (제9조 관련)

진행(발언자)	심 의 토 의 내 용